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8-307호(초·중·고교육법시행령 제78조)



꿈·희망·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

2019학년도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2018. 3.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차 례

I. 목적	1
II. 기본 방침	1
III. 지원 자격	2
IV. 전형 방법	3
1. 전기 전형	3
2. 후기 전형	5
3. 특별 전형	11
V.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방법	13
1. 기본 원칙	13
2. 영역별 성적 산출	13
3. 일부학년(기) 기록이 없는 자의 성적 산출	16
4. 고입전형용 석차 연명부 작성	20
VI. 졸업생 및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의 전학년 석차백분을 산출 방법	21
VII. 행정 사항	21
<붙임 1> 석차연명부 서식	22
<붙임 2> 2019학년도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	23
<붙임 3>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일람표	24
<붙임 4> (2021학년도 적용 예정)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방법	26

2019학년도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I 목적

1.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의 공정성, 합리성, 타당성, 다양성 제고
2.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실현

II 기본 방침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2 ~ 제105조에 의거 시행한다.
2.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선발하되, 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 전기·후기학교의 구분

- 전기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 특성화고등학교, 각종학교
- 후기학교: 일반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3. 입학 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 교원의 추천서, 면접,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 가. 과학고,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선발한다.
 - 나. 특성화고는 특기자, 각종대회 입상자, 취업희망자, 학교장 추천자,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등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4. 영재학교(대구과학고)는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한다.

III 지원 자격

1.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졸업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에 거주하는 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학교군별 추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에 거주하는 자

※ 위 2, 3항의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를 뜻한다.

4.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타 시·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 포함)로서 대구광역시 소재 학교 중 <표 1>의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표 1> 대구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지원 가능한 학교

학교명	지원 가능 지역
대구일과학고, 대구외국어고	대구광역시, 해당 계열 고등학교가 없는 광역시·도
자율형 사립고 (계성고, 대건고, 경일여고)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대구체육고, 경북예술고, 경북기계공고, 대구일마이스터고, 대구소프트웨어고, 대구농업마이스터고, 대중금속공고, 달구벌고, 대구해울고	전국

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로서 대구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 대구혁신도시 이전 기관(12개 기관): 중앙신체검사소, 중앙교육연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중앙119구조본부

IV 전형 방법

1. 전기 전형

가. 기본 방침

-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2~제88조의2, 제89조의2~제92조, 제97조, 제101조의 전기학교 전형과 관련된 조항 및 본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한다.
- 2) 전기학교의 입학 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나. 지원 방법

- 1) 전기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 2) 특성화고(달구벌고 제외)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중, 대구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출신중학교에서 나이스를 통해 원서를 작성하여 일괄 지원하고,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및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는 해당 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한다.
- 3) 이중지원 금지
 - 가) 전기학교는 1개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불합격이 확인되어도 타 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 이중지원 금지 예외

-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인된 자는 전기학교의 특성화고(달구벌고 제외)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 특성화고(달구벌고 제외) 취업희망자 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인된 자는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 나) 대구광역시 소재 전기학교는 물론 타 시·도 소재 전기학교와의 이중지원도 금한다. 동 조항은 산업수요맞춤형고 지원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다) 불합격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 4) 전·후기학교에 선발·합격·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 입학에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지원하지 못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8항)

다. 선발 방법

- 1) 전기학교는 학교별로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전형, 학교별 필기고사 및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은 금한다.
- 2) 대구일과학고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으로 학생을 선발하되,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는 반영할 수 없다.

※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

-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전형 금지
- 학교별 필기고사 금지 및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 금지
- 교내·외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 등의 활용 배제

- 3) ‘자기주도 학습전형’ 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입학 정원의 20%를 사회통합 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 4)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는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와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로 나누어 선발하되, 사회통합 전형 선발정원의 50% 이상을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로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차차상위계층(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학생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중학교장이 추천한 자

※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

- 세부기준은 학교별 입학전형 실시계획에 따르되,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만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제한함(국가 보훈대상자또는 그 자녀는 8분위 미적용)

- 5)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요강에 따라 직접 지원하고, 학교별 입학전형 방법에 따라 선발한다.

2. 후기 전형

가. 기본 방침

-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2~제88조의2, 제89조의2, 제91조의4~제92조, 제97조, 제101조, 제105조의 후기학교 전형과 관련된 조항 및 본『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한다.
- 2) 특수목적고등학교(대구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계성고, 대건고, 경일여고), 선지원 일반고(다사고, 포산고, 달서고, 대구중앙고, 현풍고)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 방법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장이 정한다.
- 3) 달성군에 소재한 선지원 일반고는 입학정원의 일부를 지역우선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 4) 타 시·도 소재 전국단위 모집 후기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대구광역시 소재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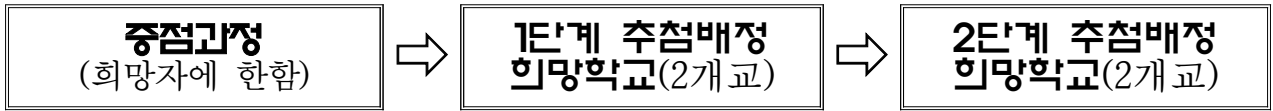
나. 지원 방법

1) 선지원 일반고

- 가) 선지원 일반고의 지역우선 전형 지원자는 당해 선지원 일반고 1개교에 지원하고, 추첨배정고 지원 및 선지원 일반고 재배정 지원도 할 수 있다. 단, 선지원 일반고 지역우선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차순위(추첨배정고 지원, 선지원 일반고 재배정 지원)의 지원은 무효가 된다.
- 나) 선지원 일반고의 지역우선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우선 전형을 실시하는 당해 학교장이 정한 지원 자격을 갖춘 자만이 지원할 수 있다.
- 다) 선지원 일반고 선배정 지원자는 학군 제한 없이 선지원 일반고 중 1개교에 지원하고, 추첨배정고 지원 및 선지원 일반고 재배정 지원도 할 수 있다. 단, 선지원 일반고 선배정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차순위(추첨배정고 지원, 선지원 일반고 재배정 지원)의 지원은 무효가 된다.
- 라) 선지원 일반고 지역우선 전형과 선배정을 동시에 지원할 수는 없다.
- 마) 선지원 일반고 재배정만 지원 할 수는 없다.
- 바)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방법에 따라 직접 지원한다.

2) 추첨배정고

추첨배정고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하여야 한다.



가) 추첨배정고 지원에 앞서 중점과정이 개설된 추첨배정고에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거주지 제한 없이 해당 과정 운영학교 1개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과학중점, 미술중점 과정은 2개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표 2> 중점과정 운영학교 현황

중점과정 유형	학교 명	학급 수	비 고
과학중점	도원고	2	16학급
	함지고	2	
	경상고	3	
	경원고	3	
	심인고	2	
	영남고	2	
	원화여고	2	
음악(클래식)중점	신명고	1	1학급
미술중점	매천고	1	4학급
	대구제일고	2	
	수성고	1	
문예창작중점	경화여고	1	1학급
국제·경제융합중점	대구동부고	1	1학급
과학·정보·수리융합중점	경상여고	3	3학급
SW·과학·수리창의융합중점	경화여고	1	1학급
국제중점	대구상원고	1	2학급
	효성여고	1	
사회·외국어 융합중점	영신고	1	1학급
소프트웨어중점	대구상원고	1	1학급
계	17교	31	31학급

나) 1단계 지원: 대구광역시 전지역(단일학군) 소재 추첨배정고 중 2개교(중복 불가)에 희망순으로 지원한다.

다) 2단계 지원: 지원자의 거주지가 속한 일반학군 내에 소재한 추첨배정고 중

서로 다른 2개교에 희망순으로 지원함. 단, 거주지가 중구인 자는 2학군에 속한 신명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 거주지 행정구역 내에 지원할 수 있는 추천배정고가 없는 경우에는 타학군에 속한 조절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표 3〉 대구광역시 학군 현황

학군		행 정 구 역
단일학군		대구광역시 전지역(고령군 다산면 포함)
일반학군	1학군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가창면
	2학군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제외), 고령군 다산면

※ 단, 우리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대구광역시 이외의 지역(고령군 다산면 제외)에 거주지를 둔 학생의 학군은 동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중학교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라) 타 학군의 조절학교에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조절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표 4〉 거주지 학군별 조절 학교

학군	조절학교 현황
1학군	사대부고, 경북여고, 대구남산고, 청구고, 매천고, 경명여고, 수성고
2학군	신명고, 경덕여고, 협성고, 대구서부고, 대구고

마) 중점학교만 지원할 수 없으며, 중점과정에 지원하여 추천(배정)되면 추천배정고의 지원 및 조절학교 지원은 무효가 된다.

바)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추천배정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사) 고등학교 교직원 자녀가 있는 중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의 부모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배정을 희망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3) 특수목적고등학교(대구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가) 대구외국어고 또는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는 해당 학교 중 1개교에 지원하고, 추천배정 일반고 또는 자율형 공립고(이하 추천배정고로 한다)에도 지원할 수 있다. 단, 대구외국어고 또는 자율형 사립고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추천배정고 지원은 무효가 된다.

나) 대구외국어고 또는 자율형 사립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 중 추천배정고에 지원한 자(추가 배정동의서 제출한 자)는 추천배정고 중점과정 및 1,2단계 추천배정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3단계 지리정보배정에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거주지가 속한 일반학군 내에 소재한

추첨배정고 중 학생의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도보, 버스, 도시철도 등을 통한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해 무작위로 배정한다.

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요강에 따라 직접 지원하고, 학교별 입학전형 방법에 따라 선발한다.

다. 선발 방법

1) 선지원 일반고

가) 당해 학교 지원자를 대상으로 「V.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석차백분을 순위로 선발한다.

나) 남·여 구분 없이 선발하며, 합격점의 동점자는 전원 선발한다.

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 중 선지원 일반고에 원서를 제출한 경우 학교별 입학전형 방법에 따라 선발한다.

2) 추첨 배정고

가) 추첨배정고 지원자를 대상으로 「V.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석차백분을 순위로 추첨배정고 전체 모집정원 만큼 합격(배정예정)자로 선발한다.

나) 남·여 구분 없이 선발하며, 합격점의 동점자는 전원 선발한다.

다) 특수목적고등학교(대구외국어고) 또는 자율형 사립고에 불합격하여 추첨배정고(3단계 지리정보배정)에 지원한 자의 석차백분율이 추첨배정고 합격선 미만일 경우에는 선발·배정에서 제외한다.

라)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추첨배정고에 원서를 제출한 경우, 일반학생과 동일한 선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배정하되, 합격선 미만인 자는 선발·배정에서 제외한다.

3) 특수목적고등학교(대구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가) 당해 학교 지원자를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되,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는 반영할 수 없다.

※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

-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전형 금지
- 학교별 필기고사 금지 및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 금지
- 교내·외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 등의 활용 배제

나)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입학 정원의 20%를

사회통합 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는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와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로 나누어 선발하되, 사회통합 전형 선발정원의 50% 이상을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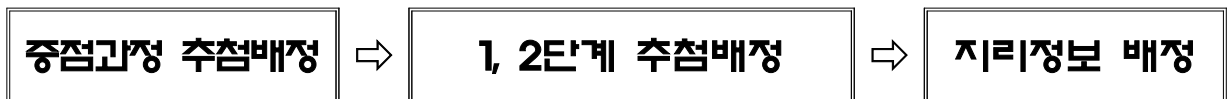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로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차차상위계층(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학생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중학교장이 추천한 자

※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

- 세부기준은 학교별 입학전형 실시계획에 따르되,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만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제한함(국가 보훈대상자또는 그 자녀는 8분위 미적용)

라. 배정 방법

추첨배정고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정 한다.



1) 중점과정 배정

중점과정은 1, 2단계 추첨배정에 앞서 추첨배정고 합격(배정예정)자 중 당해 과정 지원자를 대상으로 우선 추첨배정하고, 추첨배정 되지 않은 자는 추첨배정고의 배정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2) 1단계, 2단계 추첨 배정

당해학교 지원자 중에서 학교별 모집 정원의 60%를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추첨 배정한다.

가) (1단계) 당해 학교 지원자 중에서 지망 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정원의 50%를 추첨배정 하되 다음의 방법에 따라 배정

※ 과밀학군 거주자 중 비과밀학군 소재 학교에 1단계 1지원한 자는 추첨

배정고 1단계 배정 시 학교별 1단계 배정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나) (2단계) 1단계에서 추첨배정되지 않은 당해 학교 지원자 중에서 지방 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정원의 10%를 추첨배정

3) 3단계 지리정보 배정

1, 2단계에서 배정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리정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다.

가) (조절 배정) 추첨배정고 배정에서, 잔여합격자 수가 과밀인 학군에서 비과밀인 학군의 조절학교로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절학교 배정 희망지원자를 우선하여 배정한다.

나) (지리정보 배정) 추첨배정에서 배정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학군 내에서 학생의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도보, 버스, 도시철도 등을 통한 통학시간 및 1,2지망을 고려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해 무작위로 배정한다. 단, 거주지 행정구역 내에서 배정할 수 있는 추첨배정고가 없을 경우에는 타 학군에 속한 조절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4) 지체부자유자 배정: 합격(배정예정)자 중, 지체부자유자우선배정신청자는 『지체부자유자 우선배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그 정상(情狀)에 따라 일반학군 내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한다.

5) 중증장애인(1~3급) 자녀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일반학군 내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한다.

6) 가정위탁보호아동인 경우 관할지역 행정기관의 증빙서를 제출하면, 일반학군 내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한다.

7) 쌍둥이 배정: 합격(배정예정)자 중 같은 학교에 배정받기를 희망·신청한 경우 이를 존중하여 배정한다.

8) 다자녀(3자녀 이상) 배정: 추첨 배정고 합격자 중 둘째부터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가 원서접수 기준일 현재 추첨 배정고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 중인 학교에 우선 배정받기를 희망·신청한 경우 이를 존중하여 배정한다.

9) 학교폭력 피해학생 배정: 합격(배정예정)자 중,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배정할 때에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되,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10)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추첨배정고에 합격(배정예정자)된 경우에는 일반 학생의 배정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배정하고, 배정 학교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치한다.
- 11) 남녀 공학 학교의 학생 배정에서 성별로 특정 성(남 또는 여)의 1지원 학생수가 2학급 미만으로 인해 향후 진로집중 교육과정 운영 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성으로 배정할 수 있다.

3. 특별 전형

가. 일반전형 면제대상자(특례입학 대상자)

1) (대상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자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2) 지원 방법

가) 전기학교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고교에 직접 지원한다.

나) 후기학교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3) 선발 및 배정 방법

가) 전기학교 및 선지원 일반고

(1) 학교별 입학전형요강에 의거 학교장이 선발하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및 제4호 해당자는 학교별 모집정원 내에서 선발하고,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해당자는 학교별 모집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2(개정)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제97조제1항과 제98조의3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교별 입학전형 방법에 따라 모집정원 내에서 선발하거나, 학교별 모집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나) 추천배정고의 경우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배정하고, 82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 해당자는 배정학교 모집정원 내에서 배치하고, 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해당자는 배정학교 모집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한다.

나. 체육특기자

- 1) 대상자 선정은 『대구광역시고등학교진학체육특기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여 원서접수일 이전에 선정 여부를 통보한다.
- 2) 입학전형에 응시한 체육특기자는 입학전형 합격선에 관계없이,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신입생 전체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입학할 허가 하되, 학군에 제한 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교육감이 정하고 이에 따라 배정한다.
- 3) 체육특기자로 선정·배정된 자는 이를 포기하지 못하며, 반드시 배정받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일정에 맞춰 해당 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특수교육대상자

- 1) 지원 자격: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 해당자
- 2) 고등학교에 완전 통합된 형태로 일반학급에 배정되기를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는 「대구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배치 심사 결과에 따라 정원내로 배치한다.
- 3)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자는 반드시 배치 받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일정에 맞춰 해당 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V |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방법

1. 기본 원칙

- 가. 이 방법은 직업교육 특성화고 및 후기고(선지원고 및 추첨배정고) 입학전형에 적용한다.
- 나.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에 의한다.
- 다.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을 위한 총점은 300점으로 하고, 교과성적 80%(240점)와 생활성적 20%(60점)를 반영한다.
- 라. 교과성적의 반영비율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를 적용하여 학기별로 산출한다. 단, 자유학기제 시행학교는 별도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 마. 생활성적은 출결성적 5%(15점), 봉사활동 성적 5%(15점), 창의적체험활동(이하 창체활동)성적 5%(15점), 행동특성성적 5%(15점)로 구분·반영한다. 출결성적은 3개 학년을 합산·산출하며, 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창체활동 성적은 3개 학년별 동일 비율로 적용·산출한다.
- 바. 위에서 산출한 교과성적과 생활성적의 합산 총점으로 남·여를 통합하여 전학년 석차를 산출한 후 개인별 석차백분율을 산출한다.
- 사. (사전예고) 자유학년제를 적용받는 2018학년도 중학교 1학년 입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부터는 <붙임4>의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방법을 활용한다.

2. 영역별 성적 산출

가. 교과 성적

- 1) 교과 성적은 24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점수는 96점(40%)으로 하고, 기본점수를 제외한 점수 144점(60%)의 학년별 배점은 1학년 성적 28.8점(20%), 2학년 성적 43.2점(30%), 3학년 성적 72점(50%)을 반영하며, 각 학기별 배점은 해당 학년 배점의 $\frac{1}{2}$ 로 한다.

- 2) 교과 성적 산출은 개인의 학기별 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A_{11} , A_{12} , A_{21} , A_{22} , A_{31} , A_{32})으로 하되,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학기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 에 따른 ‘교과성적’ 산출은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계 산 식

○ 교과 성적(240점 만점)

$$= 96 + \left(2.88 \times \frac{A_{11}}{N_{11}} + 2.88 \times \frac{A_{12}}{N_{12}} + 4.32 \times \frac{A_{21}}{N_{21}} + 4.32 \times \frac{A_{22}}{N_{22}} + 7.2 \times \frac{A_{31}}{N_{31}} + 7.2 \times \frac{A_{32}}{N_{32}} \right)$$

A_{ij} : i 학년 j 학기에 이수한 개인의 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

(A: 5.0, B: 4.0, C: 3.0, D: 2.0, E: 1.0 으로 환산)

N_{ij} : i 학년 j 학기에 이수한 과목 수

- 3)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수, 우, 미, 양, 가’ 또는 ‘우수, 보통, 미흡’ 으로 기록된 평어는 다음 성취도로 환산하여 처리한다.

5단계 평가 교과					
학생부 평어	수	우	미	양	가
환산 성취도	A	B	C	D	E

3단계 평가교과(체육·예술교과)		
우수	보통	미흡
A	B	C

나. 출결 성적

- 1) 출결 성적은 15점을 만점으로 한다.
- 2) 3개 학년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횡수를 합산하여 결석 일수를 산출하되, 질병 및 기타(학교장이 인정한 결석)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 일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3)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무단 결과는 그 횡수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한다.(2회 이하는 버림)
- 4) 기타 출결상황 처리기준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 243호)』 및 『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한다.
- 5) 결석일수에 따른 출결 성적은 다음 <표 5>과 같이 산출한다.

〈표 5〉 결석일수에 따른 평점

결석 일수	평 점	결석 일수	평 점
0일	15점	11 ~ 12일	8점
1 ~ 2일	13점	13 ~ 14일	7점
3 ~ 4일	12점	15 ~ 16일	6점
5 ~ 6일	11점	17 ~ 18일	5점
7 ~ 8일	10점	19 ~ 20일	4점
9 ~ 10일	9점	21일 이상	3점

다. 봉사활동 성적

- 1) 봉사활동 성적은 15점 만점으로 하고 학년당 배점은 5점으로 한다.
- 2) 지체부자유자로 봉사활동이 불가능한 자(종합병원 진단서 등 증명서 첨부자)는 만점을 부여한다.
- 3) 봉사활동 성적 산출은 〈표 6〉와 같이 산출한다.

〈표 6〉 학년도별 봉사활동 시수에 따른 평점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기준 시수	평점	기준 시수	평점	기준 시수	평점
20시간 이상	5점	20시간 이상	5점	20시간 이상	5점
20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4점	20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4점	20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4점
15시간 미만	3점	15시간 미만	3점	15시간 미만	3점

- 4) 타 시·도에서 전입학한 학생 중 기준 시수 및 평점이 우리시와 다른 경우는 다음 환산식에 따라 시수를 학년별로 환산한 후 〈표 6〉에 의한 평점을 부여한다.

봉사활동시수 환산식	
○ 환산 시수 = 20 ×	$\frac{\text{본인이 실시한 해당학년 실시시수}}{\text{타시도 해당학년 기준시수}}$
※ 환산시수는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행동특성 성적

- 1) 행동특성 성적은 15점 만점으로 하고 학년당 배점은 5점으로 한다.
- 2) 학년당 점수 5점 중 4점은 기본 점수로 하고,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가) 행동특성 영역의 평가가 정성평가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시에 외부위원(학부모, 지역인사 등) 위촉 적극 권장
 - 나) 가산점 부여 대상 학생: 교원들에 의한 다면평가 실시 권장

3) 가산점 부여 심의 대상자

가) 효행상, 선행상 등의 모범학생 표창을 받은 자

나) 행동덕목별 최우수 모범생: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부여

마. 창체활동 성적

- 1) 창체활동 성적은 15점 만점으로 하고, 학년당 배점은 5점으로 한다. 단, 봉사활동 성적은 별도로 산출한다.
- 2) 학년당 점수 5점 중 4점은 기본 점수로 하고,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3) 가산점 부여 심의 대상자: 학급 정·부반장, 학교 학생회 간부, 학교내·외 창의적체험활동 관련 우수자 등

3. 일부학년(기) 기록이 없는 자의 성적 산출

가. 조기진급, 조기졸업(예정)자의 성적

1) 교과성적 산출 방법

교과성적은 1학년과, 2, 3학년 중 이수 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또는 보조부)에 의거 개인의 학기별·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을 합산하여 다음 환산식에 따라 산출한다.(‘학기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 에 따른 ‘교과성적’ 산출은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환 산 식

○ 교과 성적(240점 만점)

$$= 96 + \left\{ 5.76 \times \frac{A_{11}}{N_{11}} + 5.76 \times \frac{A_{12}}{N_{12}} + 8.64 \times \frac{A_{21}}{N_{21}} \left(\frac{A_{31}}{N_{31}} \right) + 8.64 \times \frac{A_{22}}{N_{22}} \left(\frac{A_{32}}{N_{32}} \right) \right\}$$

A_{ij} : i 학년 j 학기에 이수한 개인의 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

(A: 5.0, B: 4.0, C: 3.0, D: 2.0, E: 1.0 으로 환산)

N_{ij} : i 학년 j 학기에 이수한 과목 수

2) 출결, 봉사활동, 행동특성, 창체활동성적 산출 방법

가) 출결성적은 이수한 2개 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본 계획 V-2-나(출결성적)와 같이 성적을 산출한다.

나) 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창의활동 성적은 각각 이수한 2개 학년에 대하여 본 계획 V-2-다(봉사활동 성적), V-2-라(행동특성성적), V-2-마(창의활동성적)와 같이 학년별 성적을 산출하고, 이수하지 않은 학년의 성적 산출은 조기진급의 경우는 이수한 3학년 성적(조기졸업의 경우는 2학년 성적)을 미이수 학년의 성적으로 반영·산출한다.

나. 해외 귀국학생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학년(기) 기록이 없는 자의 성적

해외 귀국학생 및 복학생 등의 일부학년(기) 성적 기록이 없는 자의 성적산출 방법은 <표 7> 및 <표 8>과 같이 산출한다.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성적은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전·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산출하되, 취학, 재취학, 전·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한다.

1) 교과 성적 산출 방법

<표 7> 해외 귀국학생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학년(기) 기록이 없는 자의 교과성적

구분	교과성적(240점 만점)
1학년 또는 2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	<p>○ 교과성적</p> $= 96 + \left\{ 5.76 \times \frac{A_{21}}{N_{21}} \left(\frac{A_{11}}{N_{11}} \right) + 5.76 \times \frac{A_{22}}{N_{22}} \left(\frac{A_{12}}{N_{12}} \right) + 8.64 \times \frac{A_{31}}{N_{31}} + 8.64 \times \frac{A_{32}}{N_{32}} \right\}$ <p>A_{ij}: i 학년 j 학기에 이수한 개인의 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 (A: 5.0, B: 4.0, C: 3.0, D: 2.0, E: 1.0 으로 환산)</p> <p>N_{ij}: i 학년 j 학기에 이수한 과목 수</p>
1, 2 학년 성적이 모두 없는 경우	<p>○ 교과성적</p> $= 96 + \left(14.4 \times \frac{A_{31}}{N_{31}} + 14.4 \times \frac{A_{32}}{N_{32}} \right)$
한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p>○ 교과성적: 동 학년 이수학기 성적을 2배 처리하여 해당 학년 성적으로 반영·산출</p>

2) 봉사활동시수, 행동특성, 창체활동, 출결 성적 산출 방법

<표 8> 해외 귀국학생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학년(기) 기록이 없는 자의 생활성적

구분	봉사활동시수, 행동특성, 창체활동 성적 (15점×3개 영역=45점 만점)	출결성적(15점 만점)
1학년 또는 2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	○ 차상급 학년의 봉사활동시수, 행동특성, 창체활동 성적을 미이수 학년의 성적으로 반영·산출	○ 본 계획 V-2-나 (출결성적) 산출 방법에 의거하여 이수한 학년(기)의 실적만으로 산출 (미이수 학기의 출결상황은 반영하지 않음)
1, 2 학년 성적이 모두 없는 경우	○ 3학년의 봉사활동시수, 행동특성, 창체활동 성적을 미이수 학년의 성적으로 반영·산출	
한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 동 학년 이수학기의 봉사활동시수, 행동특성, 창체활동 성적을 해당 학년 성적으로 반영·산출	

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 학생의 교과 성적

1) 재학생 성적 산출 방법: 학기(년)별 반영비율을 차등 적용하되, 교과성적이 있는 학기의 반영비율 총합을 100%로 환산

자유 학기	구분	기본 점수	성취도 환산점 평균(144점, 60%)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환산
			1학기	2학기	소계	1학기	2학기	소계	1학기	2학기	소계			
1학년 2학기	배점 (점)	96	14.4		14.4	21.6	21.6	43.2	36	36	72	129.6	144	$\frac{100}{90}$ 환산
	비율 (%)	40	10		10	15	15	30	25	25	50	90	100	
2학년 1학기	배점 (점)	96	14.4	14.4	28.8		21.6	21.6	36	36	72	122.4	144	$\frac{100}{85}$ 환산
	비율 (%)	40	10	10	20		15	15	25	25	50	85	100	

산출식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 96 + \frac{100}{90} \left(2.88 \times \frac{A_{11}}{N_{11}} + 4.32 \times \frac{A_{21}}{N_{21}} + 4.32 \times \frac{A_{22}}{N_{22}} + 7.2 \times \frac{A_{31}}{N_{31}} + 7.2 \times \frac{A_{32}}{N_{32}} \right)$$

[2학년 1학기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 96 + \frac{100}{85} \left(2.88 \times \frac{A_{11}}{N_{11}} + 2.88 \times \frac{A_{12}}{N_{12}} + 4.32 \times \frac{A_{22}}{N_{22}} + 7.2 \times \frac{A_{31}}{N_{31}} + 7.2 \times \frac{A_{32}}{N_{32}} \right)$$

A_{ij} : i 학년 j 학기에 이수한 개인의 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
(A: 5.0, B: 4.0, C: 3.0, D: 2.0, E: 1.0 으로 환산)

N_{ij} : i 학년 j 학기에 이수한 과목 수

2) 전·출입 학생 산출 방법

-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에서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로 전입
 - 1학년 2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1학년 1학기 5%, 1학년 2학기 5% (계 10%) 적용
 - 2, 3학년은 타학생과 동일 적용 ⇒ 100%로 환산
- 일반학교에서 2학년 1학기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로 전입
 - 2학년 1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2학년 1학기 7.5%, 2학년 2학기 7.5% (계 15%) 적용
 - 1, 3학년은 타학생과 동일 적용 ⇒ 100%로 환산
-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서 일반학교로 전출
 - 1학년 2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1학년 1학기 성적을 100% 인정
- 2학년 1학기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서 일반학교로 전출
 - 2학년 1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2학년 2학기 성적을 100% 인정
-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서 2학년 1학기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로 전입
 - 1학년 2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1학년 1학기 성적을 100% 인정
 - 2학년 1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2학년 1학기 7.5%, 2학년 2학기 7.5% (계 15%) 적용
 - 3학년은 타학생과 동일 적용 ⇒ 100%로 환산
- 2학년 1학기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서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로 전입
 - 1학년 2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1학년 1학기 5%, 1학년 2학기 5% (계 10%)
 - 2학년 1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2학년 2학기 성적을 100% 인정
 - 3학년은 타학생과 동일 적용 ⇒ 100%로 환산

3)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 전입한 학생* 성적계산 방법 요약표

* 자유학기제 미실시 학교의 전입 학생

$$= 96 + \frac{100}{90} \left(2.88 \times \frac{A_{11}}{N_{11}} + 4.32 \times \frac{A_{21}}{N_{21}} + 4.32 \times \frac{A_{22}}{N_{22}} + 7.2 \times \frac{A_{31}}{N_{31}} + 7.2 \times \frac{A_{32}}{N_{32}} \right)$$

성적 존재여부				곱셈 비율	1학년		2학년 1,2학기	3학년 1,2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	○	○	○	100/90	1.44(5%)	1.44(5%)	4.32(15%) (×2)	7.2(25%) (×2)
×	○	○	○	100/90	-	2.88(10%)	4.32(15%) (×2)	7.2(25%) (×2)
○	×	○	○	100/90	2.88(10%)	-	4.32(15%) (×2)	7.2(25%) (×2)
×	×	○	○	100/100	-	-	5.76(20%) (×2)	8.64(30%) (×2)
○	○	×	○	100/80	2.88(10%)	2.88(10%)	-	8.64(30%) (×2)
×	○	×	○	100/80	-	5.76(20%)	-	8.64(30%) (×2)
○	×	×	○	100/80	5.76(20%)	-	-	8.64(30%) (×2)
×	×	×	○	100/100	-	-	-	14.4(50%) (×2)

※ 성적의 존재유무에 따라서 각 학기별로 표에 명시된 비율을 곱하되, 2학년과 3학년은 1개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학년 다른 학기의 성적을 ×2 하여 적용한다.

4. 고입전형용 석차연명부 작성

가. 석차연명부 작성 기준일은 2018. 11. 21.(수) 22:00로 한다.

나. 교과성적 및 생활성적 총점(전학년 성적 산출 점수)에 의하여 전학년 석차를 산출하되 동석차를 산출하지 않는다. 성적 산출 총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별 우선 순위에 따라 전학년 석차를 결정한다.

단 계	우 선 순 위
1 단계	생활성적 총점이 높은 자 우선
2 단계	출결성적, 봉사활동 성적, 행동특성성적, 창의활동성적 순으로 고득점자 우선
3 단계	교과성적 중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학기별 성취도 환산점 평균 ($\frac{A_{32}}{N_{32}} \rightarrow \frac{A_{31}}{N_{31}} \rightarrow \frac{A_{22}}{N_{22}} \rightarrow \frac{A_{21}}{N_{21}} \rightarrow \frac{A_{12}}{N_{12}} \rightarrow \frac{A_{11}}{N_{11}}$ 순)이 높은 자 우선
4 단계	교과성적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학기별 원점수 평균 ($\frac{S_{32}}{N_{32}} \rightarrow \frac{S_{31}}{N_{31}} \rightarrow \frac{S_{22}}{N_{22}} \rightarrow \frac{S_{21}}{N_{21}} \rightarrow \frac{S_{12}}{N_{12}} \rightarrow \frac{S_{11}}{N_{11}}$ 순)이 높은 자 우선 * S_{ij} : i 학년 j 학기에 이수한 개인의 과목별 원점수의 총합

※ 3~4단계에서 귀국학생 등 학생부의 일부학년(기) 기록이 없는 자의 성적(성취도 환산점 평균 및 원점수 평균) 적용 방안

- 1개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동학년 다른 학기 성적을 100% 인정, 적용
- 2개 학기 이상 성적이 없는 경우: 성적이 있는 학기의 성적 총합의 평균값 적용

다. 전학년 석차에 의한 ‘개인별 석차백분율’을 다음 공식에 의거 산출하여 고등학교 입학전형용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하며, 반별 출석번호순으로 석차연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별 석차백분율 산출 공식

$$\text{○ 개인별 석차백분율} = \frac{\text{개인별 석차}}{\text{성적산출일 기준 3학년 재적자 수}} \times 100$$

※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자리까지 구함

<예> 58.7846 → 58.785, 11.2004 → 11.200, 9 → 9.000

라. 석차연명부는 필요한 경우 이해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학생 졸업 후 5년간 보관한다.

VI

졸업생 및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의 전학년 석차백분율 산출방법

1. 2005 ~ 2017학년도 졸업자는 졸업학년도에 작성한 석차연명부의 석차백분율을 적용한다.
2. 1996 ~ 2004학년도 졸업자는 학교생활기록부상의 3학년에서 이수한 모든 교과 석차백분율의 평균으로, 1996학년도 이전 졸업자는 학교생활기록부상의 3학년 학년말 성적일람표상의 학년석차에 의하여 전학년 석차백분율(단, 학교생활기록부상에 학년석차가 없는 경우는 학급석차에 의한 석차백분율)을 산출한다.
3. 검정고시 합격자는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과목별 석차백분율 산출 조건표(대구광역시교육청)』에 의해 과목별 석차백분율을 구하고 그 평균으로 전과목 석차백분율을 산출한다.
4. 타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내신성적은 우리 교육청 기준에 의거 산출한다.

VII

행정 사항

1. 본 계획에 없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등에 의거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2.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시행한다.

<붙임 2>

2019학년도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

학교 구분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발표		
전 기	특수 목적고	체육고 1 대구체육고	2018.8.27.(월) ~8.31.(금)	2018.9.8.(토)	2018.9.14.(금)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4 경북기계공고, 대구일마이스터고, 대구소프트웨어고, 대구농업마이스터고	2018.10.22.(월) ~10.25.(목)	2018.11.2.(금)	2018.11.8.(목)	
		예술고 1 경북예술고	2018.11.5.(월) ~11.9.(금)	2018.11.13.(화)	2018.11.20.(화)	
		과학고 1 대구일과학고	1단계 2018.8.20.(월) ~8.22.(수)		2018.11.9.(금)	
		2단계		2018.11.17.(토)	2018.11.27.(화)	
	각종학교	대안교육 1 대구해울고(공립대안고)	2018.11.12.(월) ~11.21.(수)	2018.11.26.(월) ~11.29.(목)	2018.12.5.(수)	
	특성화고	대안교육 1 달구벌고	2018.11.12.(월) ~11.20.(화)	2018.11.23.(금) ~11.24.(토)	2018.11.27.(화)	
	특성화고 (취업희망 자전형)	직업교육 15 대구공고, 대구전자공고, 대구달서공고, 대구서 부공고, 대구제일여상고, 경북공고, 영남공고, 경 상공고, 조일고, 대중금속공고, 대구여상고, 경북 여상고, 대구보건고, 상서고, 대구관광고	2018.11.26.(월) ~11.27.(화)	2018.11.29.(목)	2018.11.30.(금)	
	특성화고 (일반전형+ 기타 특별 전형)	직업교육 15 대구공고, 대구전자공고, 대구달서공고, 대구서 부공고, 대구제일여상고, 경북공고, 영남공고, 경 상공고, 조일고, 대중금속공고, 대구여상고, 경북 여상고, 대구보건고, 상서고, 대구관광고	2018.12.3.(월) ~12.4.(화)	2018.12.6.(목)	2018.12.7.(금)	
	후 기	일반고	선지원 일반고 5 다사고, 포산고, 현풍고, 달서고, 대구중앙고	2018.12.11.(화) ~12.13.(목)		(합격자 발표) 2018.12.27.(목)
추첨배정고 48			(배정고 발표) 2019.1.31.(목)			
자율고		자율형 공립고 12				
		자율형 사립고 3 경일여고, 계성고, 대진고	1단계 2018.12.11.(화) ~12.13.(목)		2018.12.18.(화)	
			2단계	2018.12.22.(토)	2018.12.27.(목)	
특수 목적고		외국어고 1 대구외국어고	1단계 2018.12.11.(화) ~12.13.(목)		2018.12.18.(화)	
	2단계		2018.12.22.(토)	2018.12.27.(목)		
추가모집	전기고 및 선지원 일반고	2019.1.17.(목) ~1.18.(금)	2019.1.22.(화)	2019.1.23.(수)		

※ 전기고, 선지원 일반고, 자사고, 외국어고 입학허가예정자등록기간 : 2019.1.11.(금) ~ 1.15.(화)

※ 추첨배정고 등록기간 : 2019.2.11.(월) ~ 2.13.(수)

※ 위 일정은 관련 법령 개정, 학사운영 정상화 방안, 학생배치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일람표

1. 일반고 일람표(●표는 조절학교)

구분	학교소재 행정구	학교명	성별	구분	학교소재 행정구	학교명	성별		
1학군	중구	● 경북대사대부고	공학	2학군	중구	● 신명고	공학		
	수성구	경북고	남		서구	● 경덕여고	여		
		대구여고	여		대구제일고	대구제일고	공학		
		동문고	공학			남구	심인고	남	
		시지고	공학		● 협성고		남		
		● 대구남산고	공학		대곡고	공학			
		능인고	남		도원고	공학			
		대륜고	남		대구상원고	공학			
		덕원고	공학		성산고	공학			
		오성고	남		달서구	성서고	공학		
		경신고	남			와룡고	공학		
		정화여고	여			경원고	남		
		대구혜화여고	여			경화여고	여		
	대구동부고	공학	송현여고			여			
	영신고	공학	영남고			남			
	정동고	남	원화여고			여			
	● 청구고	남	효성여고			여			
	북구	● 매천고	공학			달성군	대원고	공학	
		운암고	공학				화원고	공학	
		합지고	공학		비슬고		공학		
		강북고	남		수성구		대구중앙고	공학	
		● 경명여고	여				달성군	다사고	공학
		경상고	남					현풍고	공학
		경상여고	여					달서고	공학
		성광고	남		선지원고				
		성화여고	여						
		영송여고	여						
	영진고	남							

2. 자율형 공립고 일람표

구분	학교소재 행정구	학교명	성별	구분	학교소재 행정구	학교명	성별
1학군	중구	● 경북여고	여	2학군	서구	달성고	남
	수성구	● 수성고	여			● 대구서부고	공학
	동구	강동고	공학		남구	● 대구고	남
		구암고	공학			달서구	대진고
	북구	칠성고	남		상인고		공학
		학남고	공학		호산고	공학	
선지원고	달성군	포산고	공학				

3. 자율형 사립고 일람표

구분	학교소재 행정구	학교명	성별
자율형 사립고	남구	경일여고	여
	달서구	대건고	남
	서구	계성고	공학

4. 특목고 일람표

구분	학교소재 행정구	학교명	성별
영재학교	수성구	대구과학고	공학
과학고	동구	대구일과학고	공학
외국어고	달서구	대구외국어고	공학
체육고	북구	대구체육고	공학
예술고	남구	경북예술고	공학
산업수요맞춤형고 (마이스터고)	동구	대구일마이스터고	공학
	달서구	경북기계공고	남
	달성군	대구소프트웨어고	공학
	수성구	대구농업마이스터고	공학

5. 특성화고 일람표

구분	학교소재 행정구	학교명	성별
직업교육 특성화고	동구	대구공고	남
	달서구	대구전자공고	공학
	달서구	대구달서공고	남
	서구	대구서부공고	공학
	달서구	대구제일여상고	여
	중구	경북공고	공학
	수성구	영남공고	공학
	남구	경상공고	남
	동구	조일고	공학
	북구	대중금속공고	공학
	남구	대구여상고	여
	남구	경북여상고	여
	달서구	대구보건고	여
	달서구	상서고	공학
	동구	대구관광고	공학
대안교육 특성화고	동구	달구벌고	공학

6. 각종학교 일람표

구분	학교소재 행정구	학교명	성별
각종학교	달서구	대구해솔고(공립대안고)	공학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방법 (202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 예정)

1. 기본 원칙

- 가. 이 방법은 직업교육 특성화고 및 후기고(선지원고 및 추첨배정고) 입학전형에 적용한다.
- 나.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에 의한다.
- 다.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을 위한 총점은 300점으로 하고, 교과성적 80%(240점)와 생활성적 20%(60점)를 반영한다.
- 라. 교과성적의 반영비율은 2학년 40%, 3학년 60%를 적용하여 학기별로 산출한다.
- 마. 생활성적은 출결성적 5%(15점), 봉사활동 성적 5%(15점), 창의적체험활동(이하 창체활동)성적 5%(15점), 행동특성성적 5%(15점)로 구분·반영한다. 출결성적은 3개 학년을 합산·산출하며, 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창체활동 성적은 3개 학년별 동일 비율로 적용·산출한다.
- 바. 위에서 산출한 교과성적과 생활성적의 합산 총점으로 남·여를 통합하여 전학년 석차를 산출한 후 개인별 석차백분율을 산출한다.

2. 영역별 성적 산출

가. 교과 성적

- 1) 교과 성적은 24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점수는 96점(40%)으로 하고, 기본점수를 제외한 점수 144점(60%)의 학년별 배점은 2학년 1학기 성적 28.8점(20%), 2학년 2학기 성적 28.8점(20%), 3학년 1학기 성적 43.2점(30%), 3학년 2학기 성적 43.2점(30%)을 반영한다.
- 2) 교과 성적 산출은 개인의 학기별 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A_{21} , A_{22} , A_{31} , A_{32})으로 하되,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학기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 에 따른 ‘교과성적’ 산출은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계 산 식

○ 교과 성적(240점 만점)

$$= 96 + \left(5.76 \times \frac{A_{21}}{N_{21}} + 5.76 \times \frac{A_{22}}{N_{22}} + 8.64 \times \frac{A_{31}}{N_{31}} + 8.64 \times \frac{A_{32}}{N_{32}} \right)$$

A_{ij} : i 학년 j 학기에 이수한 개인의 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

(A: 5.0, B: 4.0, C: 3.0, D: 2.0, E: 1.0 으로 환산)

N_{ij} : i 학년 j 학기에 이수한 과목 수

3)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수, 우, 미, 양, 가’ 또는 ‘우수, 보통, 미흡’ 으로 기록된 평어는 다음 성취도로 환산하여 처리한다.

5단계 평가 교과					
학생부 평어	수	우	미	양	가
환산 성취도	A	B	C	D	E

3단계 평가교과(체육·예술교과)		
우수	보통	미흡
A	B	C

나. 출결 성적

- 1) 출결 성적은 15점을 만점으로 한다.
- 2) 3개 학년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횡수를 합산하여 결석 일수를 산출하되, 질병 및 기타(학교장이 인정한 결석)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 일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3)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무단 결과는 그 횡수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한다.(2회 이하는 버림)
- 4) 기타 출결상황 처리기준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 243호)』 및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한다.
- 5) 결석일수에 따른 출결 성적은 다음 <표 8>과 같이 산출한다.

<표 8> 결석일수에 따른 평점

결 석 일 수	평 점	결 석 일 수	평 점
0일	15점	11 ~ 12일	8점
1 ~ 2일	13점	13 ~ 14일	7점
3 ~ 4일	12점	15 ~ 16일	6점
5 ~ 6일	11점	17 ~ 18일	5점
7 ~ 8일	10점	19 ~ 20일	4점
9 ~ 10일	9점	21일 이상	3점

다. 봉사활동 성적

- 1) 봉사활동 성적은 15점 만점으로 하고 학년당 배점은 5점으로 한다.
- 2) 지체부자유자로 봉사활동이 불가능한 자(종합병원 진단서 등 증명서 첨부자)는 만점을 부여한다.
- 3) 봉사활동 성적 산출은 <표 9>와 같이 산출한다.

<표 9> 학년도별 봉사활동 시수에 따른 평점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기준 시수	평점	기준 시수	평점	기준 시수	평점
20시간 이상	5점	20시간 이상	5점	20시간 이상	5점
20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4점	20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4점	20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4점
15시간 미만	3점	15시간 미만	3점	15시간 미만	3점

- 4) 타 시·도에서 전입학한 학생 중 기준 시수 및 평점이 우리시와 다른 경우는 다음 환산식에 따라 시수를 학년별로 환산한 후 <표 6>에 의한 평점을 부여한다.

봉사활동시수 환산식	
○ 환산 시수 =	$20 \times \frac{\text{본인이 실시한 해당학년 실시시수}}{\text{타시도 해당학년 기준시수}}$
※ 환산시수는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행동특성 성적

- 1) 행동특성 성적은 15점 만점으로 하고 학년당 배점은 5점으로 한다.
- 2) 학년당 점수 5점 중 4점은 기본 점수로 하고,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가) 행동특성 영역의 평가가 정성평가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시에 외부위원(학부모, 지역인사 등) 위촉 적극 권장
 - 나) 가산점 부여 대상 학생: 교원들에 의한 다면평가 실시 권장
- 3) 가산점 부여 심의 대상자
 - 가) 효행상, 선행상 등의 모범학생 표창을 받은 자
 - 나) 행동덕목별 최우수 모범생: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부여

마. 창의활동 성적

- 1) 창의활동 성적은 15점 만점으로 하고, 학년당 배점은 5점으로 한다. 단, 봉사활동 성적은 별도로 산출한다.
- 2) 학년당 점수 5점 중 4점은 기본 점수로 하고,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3) 가산점 부여 심의 대상자: 학급 정·부반장, 학교 학생회 간부, 학교내·외 창의적체험활동 관련 우수자 등

3. 일부학년(기) 기록이 없는 자의 성적 산출

가. 조기진급, 조기졸업(예정)자의 성적

1) 교과성적 산출 방법

교과성적은 2, 3학년 중 이수한 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또는 보조부)에 의거 개인의 학기별·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을 합산하여 다음 환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학기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에 따른 ‘교과성적’ 산출은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환 산 식

○ 교과 성적(240점 만점)

$$= 96 + \left\{ 14.4 \times \frac{A_{21}}{N_{21}} \left(\frac{A_{31}}{N_{31}} \right) + 14.4 \times \frac{A_{22}}{N_{22}} \left(\frac{A_{32}}{N_{32}} \right) \right\}$$

A_{ij} : i 학년 j 학기에 이수한 개인의 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

(A: 5.0, B: 4.0, C: 3.0, D: 2.0, E: 1.0 으로 환산)

N_{ij} : i 학년 j 학기에 이수한 과목 수

2) 출결, 봉사활동, 행동특성, 창의활동성적 산출 방법

가) 출결성적은 이수한 2개 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본 계획 V-2-나(출결성적)와 같이 성적을 산출한다.

나) 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창의활동 성적은 각각 이수한 2개 학년에 대하여 본 계획 V-2-다(봉사활동 성적), V-2-라(행동특성성적), V-2-마(창의활동성적)와 같이 학년별 성적을 산출하고, 이수하지 않은 학년의 성적 산출은 조기진급의 경우는 이수한 3학년 성적(조기졸업의 경우는 2학년 성적)을 미이수 학년의 성적으로 반영·산출한다.

나. 해외 귀국학생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학년(기) 기록이 없는 자의 성적

해외 귀국학생 및 복학생 등의 일부학년(기) 성적 기록이 없는 자의 성적산출 방법은 <표 10> 및 <표 11>과 같이 산출한다.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성적은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전·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산출하되, 취학, 재취학, 전·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한다.

1) 교과 성적 산출 방법

<표 10> 해외 귀국학생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학년(기) 기록이 없는 자의 교과성적

구분	교과성적(240점 만점)
2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성적 $= 96 + \left(14.4 \times \frac{A_{31}}{N_{31}} + 14.4 \times \frac{A_{32}}{N_{32}} \right)$ A_{ij}: i 학년 j 학기에 이수한 개인의 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 (A: 5.0, B: 4.0, C: 3.0, D: 2.0, E: 1.0 으로 환산) N_{ij}: i 학년 j 학기에 이수한 과목 수
한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성적: 동 학년 이수학기 성적을 2배 처리하여 해당 학년 성적으로 반영·산출

2) 봉사활동시수, 행동특성, 창체활동, 출결 성적 산출 방법

<표 11> 해외 귀국학생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학년(기) 기록이 없는 자의 생활성적

구분	봉사활동시수, 행동특성, 창체활동 성적 (15점×3개 영역=45점 만점)	출결성적(15점 만점)
1학년 또는 2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급 학년의 봉사활동시수, 행동특성, 창체활동 성적을 미이수 학년의 성적으로 반영·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 V-2-나 (출결성적) 산출 방법에 의거하여 이수한 학년(기)의 실적만으로 산출(미이수 학기의 출결상황은 반영하지 않음)
1, 2 학년 성적이 모두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학년의 봉사활동시수, 행동특성, 창체활동 성적을 미이수 학년의 성적으로 반영·산출 	
한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학년 이수학기의 봉사활동시수, 행동특성, 창체활동 성적을 해당 학년 성적으로 반영·산출 	

다. 1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 교과성적이 있는 학생의 교과 성적 산출 방법
전입학, 복학 등의 학적 변동으로 1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의 교과성적이 있는 경우 1학년 교과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2학년과 3학년의 교과성적 만을 반영하여 교과성적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1학년 1, 2학기 교과성적이 있고, 2학년 1학기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학교에서 전입한 학생의 경우 1학년 교과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2학년 2학기 성적을 2배하여 2학년 1학기에 적용한다.)